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고령운전자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3. 25. ~ 3. 2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44호
----------	--------

○ 발의연월일 : 2019. 3. 22.

○ 발 의 자 : 김미연, 최병배, 오광묵,
이영란, 허유인, 남정옥 의원

1.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보급 시행계획 수립 및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수렴(안 제3조 ~ 안 제4조)
- 예산지원 및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 전기자동차의 우선구입(안 제7조)
-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6.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광역 : 전라남도 등 12개 광역시·도
- 기초 : 과천시 등 48개 시·군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순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연구기관의 의견수렴) ① 제3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장은 환경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을 마련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구매계획을 조사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보급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매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전기이륜차와 일반이륜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주차장내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순천시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45호
----------	--------

○ 발의연월일 : 2019. 3. 22.

김미연, 남정옥, 박혜정,

○ 발 의 자 : 이영란, 박종호, 최병배,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 우리시 사고 유발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교통발생건수의 15%,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음.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교통안전 교육 등(안 제5조)
-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안 제6조)
- 재정지원 등(안 제7조)
- 시행규칙(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제93조제1항제20호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6.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천안시 등 4개 시·군·구
- 입법예고(광주광역시 남구 등 3개 시·군·구) / 전라남도 입법 검토 중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